(재)전라남도문화재단 공고 제2025 - 5호

2025년 전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시공모

(재)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는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여 일상 속에서 도민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전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시공모를 시행하오니,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[부정청탁금지에 관한 안내]

저희 재단에서는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공모와 관련된 부정청탁이 적발된 경우 동법 제7조(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)에 의하여 청탁인과 해당 지원단체에게 과태료와 보조사업 수행배제, 지원금 전액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부정청탁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월 13일

(재)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

1 공모 개요

※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세부사업명		사업내용	지원규모
사 업 명	지역 문화 예술 교육 기반 구축	움틈 문화예술교육 * 움트다 : 기운이나 생각이 새로이 일어나다	·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신진예술인 대상 기회 제공	· (개인) 6백만 원 이내
		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	·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운영	· (단체) 17백만 원 이내
		모두의 문화예술교육	· 다문화, 장애인과 소통하며 즐기는 교육활동 개발	· (단체) 15백만 원 이내
	유아 문화예술교육		· 일반 유아교육과 차별화 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	· (진입) 단체 당 20백만 원 이내 · (심화) 단체 당 40백만 원 이내
	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		· 문화예술교육사 실무경험 제공 및 프로그램 기획	· (기관) 34백만 원 이내
지원대상	전남 거주 예술인 및 전남 소재 문화예술교육 단체·기관			
공고기간	’25. 1. 13.(월) ~ 2. 14.(금) / 33일 간			
설 명 회	(1차) ’25. 1. 21.(화) 13:00 /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회의실 (2차) ’25. 1. 23.(목) 13:00 /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			
접수기간	’25. 2. 5.(수) ~ 2. 14.(금) 17:00 / 10일 간			
심의기간	’25. 2. 17.(월) ~ 3. 12.(수) / 24일 간(행정, 서류, 인터뷰)			
결과발표	’25. 3. 14.(금) 예정			
접수방법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			

※ 공모 관련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재단 누리집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※ 마감일에는 지원신청이 동시에 몰려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2~3일 전에 신청바랍니다.

※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
※ 담당자 근무시간은 월~금(09:00~18:00 /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이며 해당 시간 외에는 응대가 어려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 사업 추진일정

1 추진체계

사업 공고 · 접수 ▶ 사업 설명회 개최 ▶ 선정 심의 · 발표 ▶ 워크숍 및 컨설팅 ▶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▶ 전문가 컨설팅/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▶ 중간공유회 · 통합 페스티벌 · 역량강화 프로그램 ▶ 평가 및 환류 ▶ 정산 보고

2 주요 추진일정

추 진 일 정	내 용	세부 추진사항
’25. 1. ~ 2.	사업공모 및 접수	·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을 통한 신청
’25. 1.	사업설명회 개최	· (1차) ’25. 1. 21.(화) 13:00 / 나주 · (2차) ’25. 1. 23.(목) 13:00 / 순천
’25. 2. ~ 3.	선정심의	· 서류 및 인터뷰 심의 추진
’25. 3.	선정결과 발표	· 재단 누리집 및 NCAS를 통해 확인
’25. 3. ~ 4.	워크숍 및 컨설팅	· 사업 운영 및 교부신청 방법 안내 · ESG 연계 프로그램 운영 · 프로그램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컨설팅
’25. 4. ~ 10.	보조금 교부	· NCAS를 통한 교부신청 - 3천만 원 이상 보조금은 2회 분할 송금(각 50%씩)
’25. 5. ~ 12.	현장 모니터링	· 사업 현장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추진(재단 주관)
’25. 8. ~ 9.	중간공유회	· 프로그램 중간점검 및 컨설팅 추진
’25. 10.(예정)	통합 페스티벌	· 문화예술교육 통합 페스티벌 추진
’25. 11.(예정)	역량강화 프로그램	· 문화예술교육 관련 워크숍 및 네트워크 추진
’25. 11.	사업설계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	· 2026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설계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자문회의 추진
’25. 12.	성과공유회	· 2025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평가회

※ 워크숍, 공유회, 컨설팅, 통합 페스티벌,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석 필수

※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재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필수(성과자료집 등)

※ 사업별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통합 페스티벌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추후 재 안내

3 주요 변경사항

구분		2024년	2025년	변경사항	세부내용
사업적 측면	기반구축	-	움틈 문화예술교육	신 설	·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적은 신진 예술인들 대상 멘토링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		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	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	통 합	· 생애주기별(아동~노년)로 대상층을 구분하고 지역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※ 지리적 여건으로 참여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캠프형으로 전환 가능(농어촌 지역 대상 1일 기준 최대 6시간까지 가능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와 협의 필수)
		생애맞춤 문화예술교육			
		모두의 문화예술교육	모두의 문화예술교육	개 선	· 장애인, 다문화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연구 활동
	유아 문화예술교육	유아	진입형	개 선	· 유아문화예술교육 신규단체 발굴 · 1차 선정 후 프로그램 개선 평가 ·선정
		연수	심화형	개 선	· 프로그램 회차 변경(60회차→48회차) · 연구활동(10회) 및 연구발표회(1회) 필수 (교육회차 인정) 대상 - 유아교사, 진입형 단체, 학부모
	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		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	확 대	·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및 담당자 월례회의 진행(컨설팅, 교육, 네트워킹, 선진지 견학 등)
행정적 측면	재단 주관행사 필수 참석 (워크숍, 공유회, 통합 페스티벌,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)			개 선	· 사업 성과환류를 위한 재단주관 행사 필수 참석 ※ 문화예술교육 통합 페스티벌 참여 시 교육횟수는 인정되고 지원예산 내 강사비와 재료비 필수 편성(지원신청서 서식 참고) ※ 단,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은 통합 페스티벌 참석이 선택사항이며 참석 희망 기관에 한해 예산 편성
	주요 활동실적 선택제출		주요 활동실적 필수제출	개 선	· 지원신청서 내 주요 활동실적을 **1건 이상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제출** ※ 최근 3년('22~'24) 이내 활동실적 인정
	자체 결과발표회 진행		자체 결과발표회 진행 (선택 사항)	개 선	· 교육 횟수에 포함하여 자체 결과발표회 진행 가능 ※ 단, 재단 주관 통합 페스티벌과 별도로 운영
	대면 교육 (일부 비대면)		대면교육 필수	개 선	· 모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진행
	선정단체 자체 컨설팅 진행 (1회 이상)		재단 주관 전문가 컨설팅 필수 참석	개 선	· 워크숍, 공유회 등과 연계한 컨설팅 진행 시 필수 참석(수행단체 자체 컨설팅 제도 폐지)
	강사수당			유 지	· 주강사 6만원, 보조 4만원
	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기준 마련			개 선	· 운영인력에 대한 경력 증빙자료 필수 제출(이력서만 제출 시 불인정) **(경력증명서, 관련 자격증 등)** · 공간 활용 협약서는 사업 선정 이후 교부신청 시 제출

4 사업 운영 준수사항

지원신청	ㅇ 자부담 편성 의무 없음(자율결정) ㅇ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및 필수 제출서류 등 확인 ㅇ 지원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ㅇ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시, 교부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 행정조치 ㅇ 지원사업 선정에도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과발표 후 1개월 이내에 '사업포기 신청서' 제출 필수 ※ 기한 내 사업 포기 시 2026년도 사업 신청에 불이익은 없으며 결과발표 1개월 이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026년도 지원사업 신청 제한
교부신청 및 예산편성	ㅇ 지원확정 이후 교부신청서 작성 시 사업예산 사용에 대해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ㅇ 사업시작 2개월 전 e나라도움 및 NCAS을 통한 교부신청(사업등록) 필수 ※ 최종 보조금 교부신청 마감은 10월 31일이며, 그 이후는 사업포기로 간주함 ㅇ 사업 수행 후 보조금 교부신청 불가
사업수행	ㅇ 지원 확정 시 재단 주관 워크숍, 공유회, 컨설팅, 통합 페스티벌,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수 참석 ㅇ 사업 선정 후 보조사업 전용 통장 및 보조사업비 카드 개설(e나라도움, NCAS 전부 해당) ㅇ 사업 수행 시 각종 홍보물 및 결과물에 후원사업임을 명시 ※ 후원 : 전라남도, (재)전라남도문화재단 / 기관 누리집 내 CI 다운 가능 ㅇ 프로그램 진행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처리(모니터링 진행 시 점검) ※ 비상 상비약 구비, 소화기 설치, 위험물품 방치 여부 등 ㅇ 사업 홍보 및 성과관리를 위해 재단 담당자의 사업 관련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한 내 제출 ㅇ 사업기간 내 현장평가,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는 다음 해 지원사업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ㅇ 최종 사업비 집행은 사업 회계연도 마감일(2025. 12. 31.)을 반드시 준수 ㅇ 지원 확정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밝혀졌을 때, 당초 계획을 재단 승인 없이 변경하여 수행하였을 경우, 지원금 교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
사업정산	ㅇ 집행정산 및 정산보고서는 2026년 1월 말까지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5년 간 보관 ※ 정산 증빙자료는 결과발표 이후 매뉴얼 송부 예정

5 신청 안내

가.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

○ **(신청자격)**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(2024. 1. 13. 이전)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 및 기관·단체

※ 주민등록초본,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소재지(거주지 포함)와 발급일자 및 개업연월일 확인

※ 사업자등록증 정보 변경(법인 설립, 단체명 변경 등) 및 재발급 시 이전 자료를 반드시 제출

○ **(신청방법)**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에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

[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사용방법]

① 시스템 접속	② 회원가입*	③ 지원신청 사업 선택
④ 지원신청서 작성	⑤ 최종제출하기 클릭	⑥ 지원신청내역 확인

※ 회원가입방법 : 시스템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단체 고유번호 입력 실명(단체)확인 → 기본 정보 입력(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성) /

※ 회원가입 시 단체 및 개인구분 필수이며 세부 내용은 NCAS 사용자 매뉴얼 참고

※ 지원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 참고

※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NCAS 회원정보는 반드시 최신정보로 수정

나. 신청 제외 대상

○ **(개인)**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
○ 국·공립(도·시·구·군)문화예술기관·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

※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은 제외

○ 전남도내 소재 학교, 언론사, 종교의 선교, 정치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

○ 동일(유사) 프로그램으로 문예진흥기금, 국비, 지방비를 지원받은 단체

※ 선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동일(유사) 프로그램 운영 확인 시 교부 취소

○ 단체 일상경비 및 내부행사로 활용하려는 단체

○ 최근 3년('22~'24)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정산보고서 제출기한('25. 1월 말)까지 제출하지 않았거나 및 보조금 사업 부정 집행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
※ 단,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전남문화재단에서 보완 요청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

○ 보조금 관계 법령 등의 처리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었거나, 신청 서류의 허위가 발견될 경우

○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종교기관·친교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기관 및 단체

다. 다중지원 총량 제한
ㅇ 1개 단체에 대하여 2025년 전남문화재단의 모든 지원사업 공모에 최대 2건까지 선정·지원 가능하며, 지원금은 통합하여 80백만 원 이내로 제한 ※ 대상사업 : 문화예술지원, 문화예술교육지원, 재단 기금사업

라. 관련법령 및 제도 준수
ㅇ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(2022. 9. 25. 시행)에 근거하여 2025년 지원사업 신청자 및 단체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준수를 위해 청렴 이행 서약서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를 필수로 제출 ㅇ 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

마. 관련 규정, 법률 및 지침 위반 행위자 지원불가
ㅇ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(2024. 1. 25. 시행) 제2조(정의)에 해당하는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를 받는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※ 단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및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ㅇ 성희롱·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ㅇ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중인 단체 ㅇ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단체

6 문 의 처

구 분	사 업 명	연 락 처	비 고
전남문화재단	움틈 문화예술교육	061- 280- 5846	상담시간(평일) 09:00 ~18:00 / 점심시간 12:00 ~13:00
	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	061- 280- 5845	
	모두의 문화예술교육	061- 280- 5842	
	유아 문화예술교육	061- 280- 5842	
	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	061- 280- 5843	
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***(NCAS)***	회원가입, 지원신청 방법 등	1577- 8751	

7 사업별 공고문

가. 움틈 문화예술교육

문화예술교육 활동 경험이 적거나 관심이 있는 신진 예술인들에게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<table>
<tr><td>공모개요</td><td>○ (공 모 명) 움틈 문화예술교육
○ (운영기간) 2025. 3. ~ 12.
○ (지원금액) 개인당 6백만 원 이내
○ (지원자격) 문화예술교육에 활동 경험이 있는 개인
- 문화예술교육 활동(예술강사, 문화예술교육사 등) 경력이 있는 자
※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시 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서 운영하는 동일 프로그램·연계 프로그램으로 기획 불가
○ (지원내용) 파일럿 프로그램 8회차 운영비 지원
- 행정인력비, 강사비(주/보조/특강), 기타진행비, 공공요금 및 제세, 임차료, 사업추진비 등</td></tr>
<tr><td>접수개요</td><td>○ (접수기간) ’25. 2. 5.(수) ~ 2. 14.(금) 17:00 / 10일 간
○ (접수방법)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</td></tr>
<tr><td>운영내용</td><td>○ 사업추진프로세스
3~4월: · 선정단체 워크숍 · 교부 신청 ▶
4~5월: · 개인별 멘토링 진행 - 개인별 2~3회 ▶
6월: · 참여자간 네트워크 모임 · 역량강화 특강
7~9월: ·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- 월 2~3회, 8회차 · 현장방문 컨설팅 ▶
9~11월: · 재단주최 행사 참여 · 결과 공유회 - 진행 프로그램 공유 - 향후 발전 방안모색 ▶
10~12월: · 개인별 일지(자료집) 제작 · 정산보고서 제출
○ 멘토링 및 모니터링
- 심사 위원 중 1인을 책임컨설팅 위원으로 하여,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방향성,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멘토링 진행(피드백 일지 작성)
-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시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 추진
○ 재단 주최 간담회 운영
- 단체별 그룹 소모임 등을 통한 참여자 간 네트워크 형성
- 프로그램 기획·운영에 필요한 특강 진행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교육개요</td><td>○ (교육대상) 전남도내 거주하는 도민

< 교육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>
▪ 모집방법 : 지역 내 관련 유관기관 및 시설 등과 연계하여 모집
▪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 전 30일 이내 공개 모집 실시

○ (교육인원) 회차별 10명 내외
○ (교육분야) 예술을 포함하여 다른 장르와 결합한 융복합 문화예술
※ 예시) 미술+자연, 음악+AI, 음악+생태 등 다양한 형태로써 문화예술교육 실현 가능
○ (교육시간)
- 파일럿 프로그램 월 2~3회, 총 8회차 진행, 회차당 3시간 기준
○ (교육내용)
- 기획자가 고민하는 사회적·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주제·내용 구성
- 최소 3개 주제 선정, 주제에 따른 강사진·교육방법 다양하게 구성 가능
○ (교육방법) 교육내용에 따라 강의, 체험 등 다양한 형태 가능
○ (교육장소) 단체 보유 공간 및 지역 내 공공시설(주민센터, 마을회관, 복지시설), 문화기반시설 등

< 교육장소 관련 고려사항>
▪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가능한 시설 확보
▪ 종교, 학교 및 유사 관련시설, 학원 및 유사영업 장소, 가정집 등 민간 보유시설 운영 불가</td></tr>
<tr><td>필수사항</td><td>○ 멘토링 피드백·프로그램 운영을 기록한 일지 제작
○ 현장 방문 컨설팅 및 재단 방문 모니터링 협조
○ 재단 주최 프로그램·행사(역량강화 워크숍, 공유회, 통합 페스티벌) 참석</td></tr>
<tr><td>참여인력 구성</td><td>○ (기획자) * 사업 신청자를 뜻하며, 기획자는 주·보조강사 참여 불가
- 사업계획서, 프로그램 기획·운영
- 멘토링·역량 강화 교육 참여 등 재단 주최 프로그램 참석
○ (행정인력 1인)
-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담당
※ 교부신청서, 정산·실적 보고서, 예산 집행, 기타 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
○ (교육강사 최소 3인 이상)
- 문화예술교육사, 문화예술교육 경력이 있는 예술인 등
- 교육강사 역할 및 인원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주요 추진사항</th><th>구성인원</th></tr>
<tr><td>주 강 사</td><td>· 교육 프로그램 진행(강의 등)
· 출강확인서 작성</td><td>주제별 1인</td></tr>
<tr><td>보조강사</td><td>· 교육 프로그램 진행 보조
· 참여자 및 현장 관리</td><td>1인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심의개요

○ (심의체계) 행정심의(1차)→서류심의(2차)→인터뷰 심의(3차)

○ (심의절차)

구 분	추 진 방 법
행정심의	· 신청서류를 토대로 자격 부합여부, 필수 제출사항 검토 등
서류심의	·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검토
인터뷰 심의	·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 (서류심사에 통과한 개인에 한함)

○ (심의방법) 서류 및 인터뷰 심의 시 적용

- 심사위원 5인 이상 구성하며 채점한 결과를 최고·최저점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○ 선정심의 기준

심의항목	심의내용	배점
사업계획의 적절성	참여 대상의 연령,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인가?	10
	사업 목표를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가?	5
	프로그램 기획안이 구체적이고 내용이 충실한가?	10
사업이해도	공공사업 및 지원사업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?	5
	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는가?	10
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	문화예술교육 실천가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?	15
	해당 사업을 통해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?	15
	사업 참여 인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성이 돋보이는가?	15
	기획안이 실험적이고 차별화 지점이 엿보이는가?	15
합 계		***100***

-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, 적격자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필수 제출서류

1. 지원신청서 2. 사업계획서 3. 주민등록초본(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전남 거주 확인용) ※ 공고일(2025. 1. 13.) 이후 발행본만 인정 4. 문화예술교육 주요 활동실적***(1건 이상)*** - 지원신청서 내 작성된 실적 관련 증빙자료 ※ 사업수행 증명서(공문, e나라도움, NCAS에서 발행받은 문서) 등 ※ 프로그램명, 일시가 확인 가능한 자료 또는 증명서 등 ※ 예술강사, 문화예술교육사, 방과후 학교 강사 확인서	지정서식 [붙임 1]

※ 소요예산 작성 시 공고문 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고,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행정심사 내 결격 처리

나.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

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기반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.

공모개요	ㅇ (공 모 명)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ㅇ (운영기간) 2025. 3. ~ 12. ㅇ (지원금액) 단체 당 17백만 원 이내 ㅇ (교육횟수) 총 20회 이내 ㅇ (지원내용) 행정인력비, 강사비(주/보조/특강), 기타진행비, 공공요금 및 제세, 임차료, 사업추진비 등
접수개요	ㅇ (접수기간) '25. 2. 5.(수) ~ 2. 14.(금) 17:00 / 10일 간 ㅇ (접수방법)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교육개요	ㅇ (교육대상) 전남도내 거주하는 도민 ※ 교육대상 중복 가능 - 초등 저학년(1~3학년), 초등 고학년(4~6학년), 초등 통합(1~6학년), 중등(1~3학년), 고등(1~3학년), 중·고등 통합, 청년(20세~45세), 중·장년(46~69세), 노년(70세 이상) **< 교육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>** ▪ 모집방법 : 지역 내 관련 유관기관 및 시설 등과 연계하여 모집 ▪ 최종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모집 실시 ㅇ (교육인원) 프로그램 운영 기수별 10 ~ 20명 이내 ㅇ (교육시간) - 상 시 : 1주 1회(차) 원칙(회당 최대 4시간 운영 가능) - 기 획 : 현장학습, 자체발표회 등 별도 기획 프로그램(최대 4시간 운영가능) ※ 단, 재단에서 주관하는 통합 페스티벌과 별도로 운영 ㅇ (교육방법) 교육내용에 따라 강의, 체험 등 다양한 형태 가능**(대면 필수)** ※ 지리적 여건으로 참여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캠프형으로 전환 가능(농어촌 지역 대상 1일 기준 최대 6시간까지 가능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와 협의 필수)

<table>
<tr><td>교육개요</td><td>○ (교육장소) 단체 보유 공간 및 지역 내 공공시설(주민센터, 마을회관, 복지시설), 문화기반시설 등

< 교육장소 관련 고려사항>
■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가능한 시설 확보
■ 종교, 학교 및 유사 관련시설, 학원 및 유사영업 장소, 가정집 등 민간 보유시설 운영 불가</td></tr>
<tr><td>필수사항</td><td>○ 통합 페스티벌 강사수당(주/보조강사) 및 재료비, 회계검사수수료
※ 지원신청서 내 소요예산 항목에 필수사항에 대한 내용 기입
○ 재단 주관 워크숍, 공유회, 컨설팅, 통합 페스티벌,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수 참석
※ 통합 페스티벌은 최대 4시간 이내 교육시간 인정</td></tr>
<tr><td>참여인력 구성</td><td>○ (행정인력 1인)
-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담당
※ 사업계획 및 교부신청서, 정산실적 보고서, 예산 집행, 기타 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
○ (교육강사 2~4인)
- 문화예술교육사, 문화예술교육 경력이 있는 예술인 등
- 교육강사 역할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주요 추진사항</th><th>구성인원</th></tr><tr><td>주 강 사</td><td>· 교육 프로그램 진행(강의 등)
· 출강확인서 작성</td><td>1 ~ 2인</td></tr><tr><td>보조강사</td><td>· 교육 프로그램 진행 보조
· 참여자 및 현장 관리</td><td>2 ~ 3인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심의개요</td><td>○ (심의체계) 행정심의(1차)→서류심의(2차)→인터뷰 심의(3차)
○ (심의절차)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추 진 방 법</th></tr><tr><td>행정심의</td><td>· 신청서류를 토대로 자격 부합여부, 필수 제출사항 검토 등</td></tr><tr><td>서류심의</td><td>·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검토</td></tr><tr><td>인터뷰 심의</td><td>·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(서류심사에 통과한 단체에 한함)</td></tr></table>○ (심의방법) 서류 및 인터뷰 심의 시 적용
- 심사위원 5인 이상 구성하며 채점한 결과를 최고·최저점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, 적격단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심의개요</td><td>○ 평가기준
<table>
<tr><th>심의항목</th><th>심의내용</th><th>배점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사업 목적
및 방향</td><td>사업 목적에 맞게 방향성을 수립했는가?</td><td>30</td></tr>
<tr><td>수혜자 분석 및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상했는가?</td><td>25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보조금
예산 적절성</td><td>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가?</td><td>15</td></tr>
<tr><td>프로그램 계획 대비 운영 예산이 적절한가?</td><td>15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운영 인력
전문성</td><td>참여인력의 전문성이 잘 갖추어졌는가?</td><td>10</td></tr>
<tr><td>문화예술교육사가 참여했는가?</td><td>5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합 계</td><td>100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필수
제출서류</td><td>
<table>
<tr><td>1. 지원신청서

2. 사업계획서

3. 운영인력 인적사항
- 운영인력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필수 첨부
※ 경력증명서,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격증 등

4.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
5. 프로그램 운영 공간 현황

6. 문화예술교육 주요 활동실적(1건 이상)
- 지원신청서 내 작성된 실적 관련 증빙자료
※ 사업수행 증명서(공문, e나라도움, NCAS에서 발행받은 문서) 등
※ 프로그램명, 일시가 확인 가능한 자료 또는 증명서 등
※ 최근 3년 이내 활동실적 제출</td><td>지정서식
[붙임 2]</td></tr>
</table>
※ 소요예산 작성 시 공고문 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고,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행정심사 내 결격 처리</td></tr>
</table>

다. 모두의 문화예술교육

다문화, 장애인과 소통하며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개발하고 지역민들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공모개요	ㅇ (공 모 명) 모두의 문화예술교육 ㅇ (운영기간) 2025. 3. ~ 12. ㅇ (지원금액) 단체 당 15백만 원 이내 ㅇ (교육횟수) 10회 이상 * 연구모임 (3회) ㅇ (지원내용) 행정인력비, 강사비(주/보조/특강), 기타진행비, 공공요금 및 제세, 임차료, 사업추진비 등
접수개요	ㅇ (접수기간) '25. 2. 5.(수) ~ 2. 14.(금) 17:00 / 10일 간 ㅇ (접수방법)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교육개요	ㅇ (교육대상) 전남도내의 거주하는 도민 (장애인, 다문화 포함) **< 교육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>** ■ 모집방법 : 지역 내 관련 유관기관 및 시설 등과 연계하여 모집 ■ 다문화, 장애인에게 단순 예술 체험(온데이클래스, 키트체험)과 기능교육 지양 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이야기하는 장애인, 다문화의 시선에서 기획 ㅇ (교육인원) 프로그램 운영 기수별 10명 이내 ㅇ (교육시간) - 상 시 : 1주 1회(차) 원칙(회당 최대 3시간 운영 가능) - 기 획 : 현장학습, 자체발표회 등 별도 기획 프로그램(최대 4시간 운영가능) ※ 단, 재단에서 주관하는 통합 페스티벌과 별도로 운영 ㅇ (교육방법) - 교육 수혜자 사전 조사를 반영한 사업목적과 활동계획 수립 - 문화 다양성 기반 문화예술 활동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-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연구 활동 구성 가능(최대 3회 / 9시간) - 전문가 컨설팅 반영한 연구 활동으로 프로그램 개선 후 운영 - 원주민과 이주민,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구성

<table>
<tr>
<td>교육개요</td>
<td>
○ (연구활동)
<table>
<tr><th>1회</th><th></th><th>2회</th><th></th><th>3회</th></tr>
<tr><td>· 전문가 컨설팅
· 단체 별 컨설팅 진행</td><td>▶</td><td>· 컨설팅 내용기반
· 단체 구성원 회의
· 전문가 구성 가능</td><td>▶</td><td>· 선정단체 전체 컨설팅
· 연구결과 발표
· 프로그램 구성과 목적 등</td></tr>
<tr><td>재단 운영</td><td></td><td>참여단체 운영</td><td></td><td>재단 운영</td></tr>
</table>
- 1회 : 연구모임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연구방향과 목적, 활동계획 방향성 수립
- 2회 :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참여단체의 연구모임, 자체 전문가 구성 가능
- 3회 : 선정단체 전체 모여 프로그램 운영 정보 공유, 네트워크 구성
○ (교육장소) 단체 보유 공간 및 지역 내 공공시설(다문화지원센터) 관련 문화기반시설 등

< 교육장소 관련 고려사항>
■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가능한 시설 확보
■ 종교, 학교 및 유사 관련시설, 학원 및 유사영업 장소, 가정집 등 민간 보유시설 운영 불가
</td>
</tr>
<tr>
<td>필수사항</td>
<td>
○ 통합 페스티벌 강사수당(주/보조강사) 및 재료비, 회계검사수수료
○ 연구활동에 대한 강사비와 보조강사비, 행정인력 예산 수립
※ 지원신청서 내 소요예산 항목에 필수사항에 대한 내용 기입
○ 재단 주관 워크숍, 공유회, 컨설팅, 통합 페스티벌,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수 참석
※ 통합 페스티벌은 최대 4시간 이내 교육시간 인정
</td>
</tr>
<tr>
<td>참여인력 구성</td>
<td>
○ (행정인력 1인)
-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담당
※ 사업계획 및 교부신청서, 정산실적 보고서, 예산 집행, 기타 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
○ (교육강사 2~4인)
- 문화예술교육사, 문화예술교육 경력이 있는 예술인 등
- 교육강사 역할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주요 추진사항</th><th>구성인원</th></tr>
<tr><td>주 강 사</td><td>· 교육 프로그램 진행(강의 등)
· 출강확인서 작성</td><td>1 ~ 2인</td></tr>
<tr><td>보조강사</td><td>· 교육 프로그램 진행 보조
· 참여자 및 현장 관리</td><td>2 ~ 3인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심의개요</td>
<td>
○ (심의체계) 행정심의(1차)→서류심의(2차)→인터뷰 심의(3차)
○ (심의절차)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추 진 방 법</th></tr>
<tr><td>행정심의</td><td>· 신청서류를 토대로 자격 부합여부, 필수 제출사항 검토 등</td></tr>
<tr><td>서류심의</td><td>·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검토</td></tr>
<tr><td>인터뷰 심의</td><td>·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(서류심사에 통과한 단체에 한함)</td></tr>
</table>
○ (심의방법) 서류 및 인터뷰 심의 시 적용
- 심사위원 5인 이상 구성하며 채점한 결과를 최고·최저점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, 적격단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○ 평가기준
<table>
<tr><th>심의항목</th><th>심의내용</th><th>배점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사업 목적 및 방향</td><td>사업 목적에 맞게 방향성을 수립했는가?</td><td>30</td></tr>
<tr><td>수혜자 분석 및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상했는가?</td><td>25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보조금 예산 적절성</td><td>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가?</td><td>15</td></tr>
<tr><td>프로그램 계획 대비 운영 예산이 적절한가?</td><td>15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운영 인력 전문성</td><td>참여인력의 전문성이 잘 갖추어졌는가?</td><td>10</td></tr>
<tr><td>문화예술교육사가 참여했는가?</td><td>5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합 계</td><td>100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필수 제출서류</td>
<td>
<table>
<tr>
<td>1. 지원신청서

2. 사업계획서

3. 운영인력 인적사항
- 운영인력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필수 첨부
※ 경력증명서,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격증 등

4.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
5. 프로그램 운영 공간 현황

6. 문화예술교육 주요 활동실적(1건 이상)
- 지원신청서 내 작성된 실적 관련 증빙자료
※ 사업수행 증명서(공문, e나라도움, NCAS에서 발행받은 문서) 등
※ 프로그램명, 일시가 확인 가능한 자료 또는 증명서 등
※ 최근 3년 이내 활동실적 제출</td>
<td>지정서식
[붙임 3]</td>
</tr>
</table>
※ 소요예산 작성 시 공고문 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고,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행정심사 내 결격 처리
</td>
</tr>
</table>

라. 유아 문화예술교육

지역의 콘텐츠를 유아 누리과정에 맞춰 일반 유아교육과 차별화된 예술성 심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입니다.

공모개요

○ (공 모 명) 유아문화예술교육

○ 공모유형별 개요

구분	진입형(* 컨설팅)	심화형(교육+연수)
운영기간	2025. 3. ~ 12.	2025. 3. ~ 12.
운영목적	신규 유아문화예술교육 단체 발굴	기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심화 발전
지원내용	유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신규 프로그램 연구·개발비 *예산편성 기준안 참고	유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연구결과 발표회 연구·개발비 * 예산편성 기준안 참고
교육횟수	12회 ~ 24회 ※ 선정단체에 따른 교육 회차 변경	48회
교육대상	유아교육기관의 만 3~5세 유아	전남 영·유아교육기관의 만 3~5세 연구발표 : 유아교사, 진입형 선정단체 학부모, 유아
지원자격	유아문화예술교육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신규 문화시설 및 단체	유아문화예술교육사업 수행실적이 1년 이상 있는 문화시설 및 단체
선정단체	1차 선정 : 3단체(기관) 최종 선정 : 2~3 단체(기관)	3단체(기관)
지원금액	단체 당 13,000 ~ 20,000천 원	단체 당 40,000천 원
공통사항	공모 유형별 중복지원 불가 프로그램 수혜자 사전조사 필수	
필수사항	- 신청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- 컨설팅 반영한 프로그램 수정 - 수정프로그램 전문가 심사로 선정 - 심화형 연구결과 발표회 참석	유야 교육 : 48회(12시설) 연구 활동 : 최대 10회(30시간) 연구결과 발표회 : 1회 (5시간)

접수개요

○ (접수기간) ’25. 2. 5.(수) ~ 2. 14.(금) 17:00 / 10일 간

○ (접수방법)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교육 개요 (공통)	○ (교육대상) 전남 도내 유아(만 3세~5세 미취학 유아) **<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사항>** ■ 유아교육기관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·예술활동 중심 프로그램 설계 ■ 4차시 과정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연계되어진 예술 활동 교육 개발 ■ 기능교육 및 단순 체험형 예술활동, 일회성 제작 형태 지양 ○ (교육인원) 1개 반 10명~20명 내외 ○ (교육시간) - 유아교육 기관 당 4회 차 프로그램 구성(회차 당 최대 3시간 운영 가능) ○ (교육방법) - **방문형·체험형***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구성(단, 체험형은 최소 1회 이상) - 4회 프로그램은 하나의 주제에 연결되어진 형태로 구성 - 문화소외지역(읍·면 단위)로 방문하는 경우, 방문형 수업으로만 구성 가능 - **교육 활동 안내지**를 제작하여 유아기관에 전달하여 프로그램 사전 공유 **< 방문형·체험형 안내>** ■ 방문형: 프로그램 강사진이 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해서 진행 ■ 체험형: 유아가 단체의 문화시설로 방문하여 프로그램 진행 ○ (교육장소) 단체 보유 공간 및 유아교육기관(어린이집, 유치원),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, 생활문화시설(생활문화센터) **< 교육장소 관련 고려사항>** ■ 유아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안전하게 운영 가능한 시설 확보 ■ 종교, 학교 및 유사 관련시설, 학원 및 유사영업 장소, 가정집 등 민간 보유·대여 시설 운영 **불가**
운영 내용 (진입형)	○ 1차 선정단체 유아대상 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컨설팅 진행 ○ 컨설팅 내용 적극 반영한 유아프로그램 기획서 작성(2차 심사&선정) ○ 선정 단체 교부 후 프로그램 연구 활동(4회차)운영 가능 ※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인건비 기준 주강사비와 동일 ○ 심화형 사업 연구결과 발표회 및 재단이 준비한 행사 필수 참석
교육 개요 (심화형)	○ 운영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심화발전 연구 활동 필수 ○ 운영 프로그램 주제를 심화 연구 활동 구성원 구축 가능(참여강사, 기획자, 유아전문가, 예술가) ○ 연구 활동에 사업 참여 강사 필수 포함. 외부 전문가 포함 구성 가능 ※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인건비 기준 주강사비와 동일 ○ 연구 활동(10회), 연구결과 발표회(1회) 교육활동 인정(컨설팅 포함)

<table>
<tr>
<td>추진절차</td>
<td>
○ 진입형
2월 | 1차 선정 | 문화재단
▶ 3월 | 전문가 컨설팅 | 전문가/문화재단
▶ 4월 | 프로그램 개선 후 제출 | 선정단체
▶ 4월 | 2차 심의/선정 | 선정단체
▶ 5월 | 교부 신청 유아교육기관 모집 | 전문가/선정단체
▶ (6월 ~ 11월) | 프로그램 운영 | 선정단체
▶ 8월 | 현장컨설팅 | 선정단체/전문가
▶ 10월 | 문화예술교육 페스타 | 선정단체
▶ 11월 | 역량강화 워크숍 | 문화재단
▶ 12월 | 연구발표회 연수 참석 | 선정단체
▶ 12월 | 정산/실적보고서 제출 | 선정단체
- 1차 선정 후 전문가와 교육프로그램 수정·보완 컨설팅 진행 필수
- 컨설팅 과정에 기획자, 주강사 필수 참여하여 유아 프로그램 취지 이해
- 교부 후 프로그램 연구 과정 시수 인정. 강사비와 행정인력 지급가능
- 선정 단체는 전문가 컨설팅 내용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 수정
○ 심화형
2월 | 공모선정 | 문화재단
▶ 3월 | 전문가 컨설팅 | 전문가/문화재단
▶ 4월 | 교부신청 유아교육기관 모집 | 선정단체
▶ 4월 ~ 11월 | 프로그램 운영 | 선정단체
▶ 8월 | 현장 컨설팅 | 전문가
▶ 8월~11월 | 연구활동 진행 | 선정단체
▶ 10월 | 문화예술교육 페스타 | 선정단체
▶ 11월 | 역량강화 워크숍 | 문화재단
▶ 11월 | 연구활동 컨설팅 | 전문가
▶ 12월 | 연구 결과 발표회 | 선정단체
▶ 12월 | 정산/실적보고서 제출 | 선정단체
- 운영 프로그램을 심화 발전을 위한 전문가 포함 연구 활동 인력 구성
- 연구 활동을 위한 전문가(유아전문가, 문화예술교육 전문가) 예산 가능
- 연구결과발표회 대상(유아, 유아교사, 학부모) 중 선택하여 진행
</td>
</tr>
<tr>
<td>필수사항</td>
<td>
○ 통합 페스티벌 강사수당(주/보조강사 및 재료비), 회계검사수수료
※ 지원신청서 내 소요예산 항목에 필수사항에 대한 내용 기입
○ 재단 주관 워크숍, 공유회, 컨설팅, 통합 페스티벌,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수 참석
※ 통합 페스티벌은 최대 4시간 이내 교육시간 인정
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참여인력
구성</td>
<td>

○ (행정인력 1인)
-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담당
※ 사업계획 및 교부신청서, 정산·실적 보고서, 예산 집행, 기타 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
○ (교육강사 2~4인)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주요 추진사항</th><th>구성인원</th></tr>
<tr><td>주 강 사</td><td>· 유아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소통
·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예술활동</td><td>2인</td></tr>
<tr><td>보조강사</td><td>· 교육 프로그램 진행 보조
· 참여자 및 현장 관리</td><td>2인</td></tr>
</table>

○ (연구활동) ※ 연구활동에는 주강사, 보조강사, 행정인력 필수 참석
- 문화예술교육 전문가, 유아교육 전문가, 예술가 등 필요인력 구성

</td>
</tr>
<tr>
<td>심의개요</td>
<td>

○ (심의체계) 행정심의(1차)→서류심의(2차)→인터뷰 심의(3차)
○ (심의절차)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추 진 방 법</th></tr>
<tr><td>행정심의</td><td>· 신청서류를 토대로 자격 부합여부, 필수 제출사항 검토 등</td></tr>
<tr><td>서류심의</td><td>·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검토</td></tr>
<tr><td>인터뷰 심의</td><td>·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
(서류심사에 통과한 단체에 한함)</td></tr>
</table>

○ (심의방법) 서류 및 인터뷰 심의 시 적용
- 심사위원 5인 이상 구성하며 채점한 결과를 최고·최저점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, 적격단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○ 평가기준(진입형)

<table>
<tr><th>심의항목</th><th>심의내용</th><th>배점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사업 목적
및 방향</td><td>(방향) 프로그램 독창성과 실현성이 있는가?</td><td>20</td></tr>
<tr><td>(대상) 유아기 특성을 고려한 사업 기획하였는가?</td><td>30</td></tr>
<tr><td>(공간) 프로그램에 맞는 안전한 공간이 확보 되었는가?</td><td>20</td></tr>
<tr><td>보조금
예산 적절성</td><td>프로그램 계획 대비 운영 예산이 적절한가?</td><td>10</td></tr>
<tr><td>운영 인력
전문성</td><td>참여인력이 유아교육에 전문성 있게 구성되었는가?
(유아교육전문가, 예술강사, 기획자, 강사진)</td><td>2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합 계</td><td>100</td></tr>
</table>

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심의개요</td><td>○ 평가기준(심화형)
<table>
<tr><th>심의항목</th><th>심의내용</th><th>배점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사업 목적
및 방향</td><td>(방향) 프로그램 실현 가능성은 충분한가?</td><td>20</td></tr>
<tr><td>(대상) 유아기 특성을 고려한 사업 기획하였는가?</td><td>30</td></tr>
<tr><td>(특성)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전문 분야 일치한가?</td><td>20</td></tr>
<tr><td>보조금
예산 적절성</td><td>프로그램 계획 대비 운영 예산 적절한가?</td><td>10</td></tr>
<tr><td>운영 인력
전문성</td><td>참여인력이 유아교육에 전문성 있게 구성되었는가?
(유아교육전문가, 예술강사, 기획자, 강사진)</td><td>2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합 계</td><td>100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필수
제출서류</td><td>
<table>
<tr><td>1. 지원신청서

2. 사업계획서

3. 운영인력 인적사항
- 운영인력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필수 첨부
※ 경력증명서,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격증 등

4.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
5. 프로그램 운영 공간 현황

6. 문화예술교육 주요 활동실적(1건 이상)
- 지원신청서 내 작성된 실적 관련 증빙자료
※ 프로그램명, 일시가 확인 가능한 자료 또는 증명서 등
※ 최근 3년 이내 유아문화예술교육 활동실적 제출
※ 진입형은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사업에서 수행했던 교육프로그램 실적도 인정</td><td>지정서식
[붙임 4]</td></tr>
</table>
※ 소요예산 작성 시 공고문 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고,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행정심사 내 결격 처리</td></tr>
</table>

마.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

도내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・운영하여 전문 인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
공모개요	ㅇ (공 모 명)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ㅇ (운영기간) 2025. 3. ~ 12. ㅇ (지원금액) 시설 당 34백만 원 이내 ※ 교육 프로그램 운영 최대 13백만 원 ㅇ (지원대상) 도내 문화기반시설 ㅇ (지원내용) 문화예술교육사를 문화기반시설(국·공립, 시·군 위탁 등)에 배치하여 교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
접수개요	ㅇ (접수기간) '25. 2. 5.(수) ~ 2. 14.(금) 17:00 / 10일 간 ㅇ (접수방법)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운영내용	■ 선정방향 ㅇ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방향과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 갖춘 운영 기관을 선정 ■ 문화예술교육사 역할 ㅇ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로서 문화시설과 함께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등 예술교육 전반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 ■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ㅇ 문화기반시설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공개 채용 선발(원칙) - 문화예술교육사 근로계약은 주 40시간, 근무 기간 8~10개월 ※ 근로 계약서에 근로시간, 근무 요일 기재 필수(주별 변경 불가) ※ 공개모집 시, 운영시설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력 채용 관련 홈페이지에 문화예술교육사 모집공고 게시 - 만 39세 이하,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하인 자 우대 선발 ㅇ 문화예술교육사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1인 이상 지정 ※ 사업계획 및 교부신청서, 정산・실적 보고서, 예산 집행, 기타 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

교육개요	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 ○ (교육시간) 프로그램 운영 횟수 10회(차) 이상(회당 3시간 이상) ○ (교육방법) 기관과 문화예술교육사의 협의를 통해 강의, 체험, 관람, 실연, 캠프 등 다양한 형태를 연계 구성 ○ (교육참가비) 무료 **< 선정 시 사업 계획 고려사항>** 1. 문화시설 내 근무환경 조성 여부: 근무환경, 문화공간 시설물 등 2.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공정성: 공개 채용, 심사계획, 운영 일정 등 3. 문화예술교육사 복무 관리: 일지, 근무 일정, 업무분장 등 4.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지원: 멘토링, 북나눔 등 지원 방안 검토 5. 특화 프로그램 예시안 및 제안서: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시 활용 ○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0조(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)에 해당하는 의무배치시설 및 시·군 운영시설 우선 선정 **< 의무배치시설 및 시·군 운영시설>** 1.「공연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국·공립 공연장 2.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·공립 박물관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·공립 미술관 3.「도서관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.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.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※ 전수회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(국가문화유산청 지원 중)
문화예술 교육사 인건비	■ 기본급은 2025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책정 ○ 4대 보험금 중 개인부담금 기본급에 포함, 기관부담금은 별도 책정 ○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야간, 휴일수당 등 책정 ○ 프로그램 강사비와 중복 지급 불가 ○ 채용 기간 동안 근로계약 기준 준수하여 인건비 제공 ○ 채용 기간 동안 시설 직원과 차별 없는 직원복지 제공

<table>
<tr>
<td>참여인력
강사비</td>
<td>
○ (교육강사 2~4인)
- 문화예술교육사, 문화예술교육 경력이 있는 예술인 등
- 교육강사 역할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주요 추진사항</th><th>구성인원</th></tr>
<tr><td>주 강 사</td><td>· 교육 프로그램 진행(강의 등)
· 출강확인서 작성</td><td>1 ~ 2인</td></tr>
<tr><td>보조강사</td><td>· 교육 프로그램 진행 보조
· 참여자 및 현장 관리</td><td>2 ~ 3인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필수사항</td>
<td>
○ 재단에서 추진하는 월례회의 등에 기관·시설 문화예술교육사 및 담당자 참석
-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, 전남문화재단 주관 워크숍, 공유회, 컨설팅 참석
※ 재단 주최 각종 프로그램 참석 시 소요될 여비(교통비) 편성
○ 현장 방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 협조
○ 월별 운영일지 작성(기관용, 교육사용)
</td>
</tr>
<tr>
<td>심의개요</td>
<td>
○ (심의체계) 행정심의(1차)→서류심의(2차)→인터뷰 심의(3차)
○ (심의절차)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추 진 방 법</th></tr>
<tr><td>행정심의</td><td>· 신청서류를 토대로 자격 부합 여부, 필수 제출사항 검토 등</td></tr>
<tr><td>서류심의</td><td>·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검토</td></tr>
<tr><td>인터뷰 심의</td><td>·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(서류심사에 통과한 단체에 한함)</td></tr>
</table>
○ (심의방법) 서류 및 인터뷰 심의 시 적용
- 심사위원 5인 이상 구성하며 채점한 결과를 최고·최저점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, 적격단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심의개요</td><td>○ (심사 평가표)
<table>
<tr><th>심의항목</th><th>심의내용</th><th>배점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사업 이해도 및 적합성</td><td>사업 취지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?
(교육사 및 문화시설 간 역할분담과 과업의 적합성)</td><td>20</td></tr>
<tr><td>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여부가 타당한가?
(복무관리 여부, 근무환경, 문화공간 시설물 등)</td><td>20</td></tr>
<tr><td>보조금 예산 적절성</td><td>프로그램 계획 대비 운영 예산이 적절히 측정되었는가?</td><td>25</td></tr>
<tr><td>지역성</td><td>지역의 여건 및 현안, 특성을 반영하였는가?</td><td>20</td></tr>
<tr><td>발전 가능성</td><td>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이 지속·성장 가능성 있는가?</td><td>15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합 계</td><td>100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필수
제출서류</td><td>
<table>
<tr><td>1. 지원신청서

2. 사업계획서

3. 운영인력 인적사항
- 운영인력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필수 첨부
※ 경력증명서,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격증 등

4.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
5. 프로그램 운영 공간 현황

6. 문화예술교육 주요 활동실적(1건 이상)
- 지원신청서 내 작성된 실적 관련 증빙자료
※ 사업수행 증명서(공문, e나라도움, NCAS에서 발행받은 문서) 등
※ 프로그램명, 일시가 확인 가능한 자료 또는 증명서 등
※ 최근 3년 이내 활동실적 제출</td><td>지정서식
[붙임 5]</td></tr>
</table>
※ 소요예산 작성 시 공고문 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고,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행정심사 내 결격 처리</td></tr>
</table>

참고 예산편성 기준

□ 대상사업 : 움틈, 지역특성화, 모두의, 유아 문화예술교육

<table>
<tr><th>목</th><th>세</th><th>구분</th><th>산출기준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인건비</td><td rowspan="2">보수</td><td>보조 인력</td><td>▪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: 1일(8시간) 81,000원 / 1인 * 2024년 대비 1.7% 인상
- 2025년 최저임금 1시간당 10,030원 X 8시간 = 80,240원
-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인건비의 150%를 지급 : 8시간 기준 121,500원 / 1인
- 예산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(초과근로 발생 시 재단과 사전 협의 필수)
- 주휴일 지급 기준: 일하기로 정한 시간(소정근로시간)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(주휴를 포함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확보 필요)
-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한 주로 봄
- 주휴수당 계산 방법: 81,000원 x 1주 소정근로시간 / 40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운영비</td><td rowspan="3">일반 수용비</td><td rowspan="3">사례비</td><td>▪ 행정인력비 : 교육 프로그램 회차당 기본 70,000원
- 사업관리(회계, 서류 작성 등(1일 기준 4시간 이상)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
- 동일인이 행정과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(중복 지급 불가)</td></tr>
<tr><td>▪ 강사비 : 주강사(시간당 60,000원) / 보조강사(시간당 40,000원)
-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(기획 프로그램 경우 최대 4시간)
-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 중복 지급 불가
- 지급내역서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, 교육 일자·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, 출강확인서
- 강사 계좌입금(월별지급) 원칙</td></tr>
<tr><td>▪ 초빙강사료 :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예시 : 총 2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, 최대 2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
▪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%만 추가 적용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등급</th><th>지급금액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강사료</td><td>1등급※</td><td>250,000/시간</td></tr>
<tr><td>2등급※</td><td>150,000/시간</td></tr>
<tr><td>3등급※</td><td>100,000/시간</td></tr>
</table>
※ 1등급 : 대학 총.학장, 주요 기관장급 /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
2등급 : 대학부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
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
전·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, 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
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
3등급 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
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
전·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
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, 그 밖의 기타 경력자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▪ 사례비 지급 시 수당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
※ 사업비 정산 시 국세·지방세 납부증명서, 수수료 지급 내역서 제출 필수

원천징수 :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,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</td></tr>
</table>

목	세	구분	산출기준
운영비	일반 수용비	홍보 및 마케팅	**▪ 프로그램 진행 시,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현수막, 배너, 홍보물 등** **※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비교견적 시행**
		재료비	▪ 프로그램 진행 시,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용품, 소모품 구입 등 **※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비교견적 시행**
		용역비	**▪ 행사 대행업체 용역, 영상물 제작 용역(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 작업 제외)** **※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비교견적 시행**
		수수료	**▪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예상 기준액(부가세 포함)** -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 : 440,000원 내외 - 3천만원 이상 ~ 4천만원 미만 : 550,000원 내외 **※ 세무법인은 회계검사 불가하며 자체적으로 회계법인 지정 가능**
	공공요금 및 제세		**▪ 행사 진행 시 발생되는 우편료, 보험료 등**
	임차료		**▪ 차량 임차 : 실비적용** -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,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**▪ 장소 대관 :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** ※ 문화기반시설에 한하여 대관료를 인정. 1회(3시간 기준)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 (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, 단체 보유 시설 및 운영인력 관련 장소 집행 불가) **▪ 장비, 소품 등 기자재 대여**

목	세	구분	산출기준
여비	국내여비		▪ **교통비 : 실비정액 기준(대중교통비 지급)** - 재단 주관 워크숍, 공유회 등 행사 참여 및 초빙강사 교통비 지급 시 적용 가능 (그 외 사항은 지급 불가) - 부득이하게 개인차량 이용 시 **차량유류비 지원 기준**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※ 사용자에게 교통비 지급 시 유류비, 통행료 등 카드 결제는 불가**(계좌이체 원칙)** - 출장결과 보고 등 영수증 증빙 필수 **[유류비 산출기준] 여행거리(km) × 유가 ÷ 연비** **o 여행거리(km)** -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,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※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(www.roadplus.com)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**o 유가** -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※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(www.opinet.co.kr)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(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,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, LPG 차량은 자동차 부탄)를 적용 **o 연비(km/ℓ) * 원 단위 절사** - 휘발유 차량 : 11.97(km/ℓ) / 경유 차량 : 12.52(km/ℓ) / LPG 차량 : 8.83(km/ℓ) - 하이브리드 차량 : 15.37(km/ℓ) / 전기차량 : 5.22(km/kwh) * 2023 인사혁신처 예규 제 132호에 따름
업무추진비	사업추진비		▪ **다과비 기준단가 : 5,000원 이내 / 1인 1회 기준** - 참여자 대상 다과비 집행 시 : 매회 집행 불가, 기획 프로그램 운영 시 운영 권장 ▪ **회의식비 기준단가 : 9,000원 이내 / 1인 1식 기준** - 점심시간(12:00) 및 저녁시간(18:00)에 인접하여 일정이 끝나거나 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**※ 사업추진비는 전체 예산 중 10% 이내 편성** ※ 회의식비 지출 시 정확한 참여인원이 기재된 회의록과 사진 제출 필수 ※ 내부 관계자(행정인력, 주·보조강사)로 구성된 회의식비는 불인정이며, 반드시 외부 관계자(컨설팅 위원, 전문강사 등)와 함께 진행(회의록 내 명단 작성 필수)

[참조] 보조금 집행 불가 사항

- ㅇ 구입 : 자산성, 시혜성 물품(사례성 선물용품, 문화상품권 등)
- ㅇ 집행 : 사행성 경비, 주류 및 유흥성, 단체 운영을 위한 경상비(전기세, 전화요금 등), 지원금 집행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적립, 운영인력 내부 및 친・인척 거래처
- ㅇ 보조금의 경우 사업 통장과 연결된 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를 진행해야 할 경우 세금계산서 집행(강사비, 전문가 활용비, 보조인력비 예외)
- ㅇ 단체 및 개인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, 교육비

□ 대상사업 :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

<table>
<tr><th>목</th><th>세</th><th>구분</th><th>산출기준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운영비
(210)</td><td rowspan="3">일반
수용비
(01)</td><td>강사비</td><td>▪ 주강사 : 시간당 60,000원 / 보조강사 : 시간당 40,000원
-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(기획 프로그램 경우 최대 4시간)
-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 중복 지급 불가
- 지급내역서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, 교육 일자·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, 출강확인서
- 강사 계좌입금(월별 지급) 원칙</td></tr>
<tr><td>초빙
강사료</td><td>▪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예시 : 총 2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, 최대 2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
▪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%만 추가 적용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등급</th><th>지급금액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강사료</td><td>1등급※</td><td>250,000/시간</td></tr><tr><td>2등급※</td><td>150,000/시간</td></tr><tr><td>3등급※</td><td>100,000/시간</td></tr></table>※ 1등급 : 대학 총.학장, 주요 기관장급 /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
2등급 : 대학부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
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
전·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, 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
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
3등급 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
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
전·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
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, 그 밖의 기타 경력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▪ 사례비 지급 시 수당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
※ 사업비 정산 시 국세·지방세 납부증명서, 수수료 지급 내역서 제출 필수
원천징수 :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,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목</th><th>세</th><th>구분</th><th>산출기준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운영비
(210)</td><td rowspan="3">일반
수용비
(01)</td><td>강사
교통비</td><td>▪ 섬-육지 도선일 경우에 실비(도선비) 지급 가능
▪ 타 지역(시·군)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음
-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- 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
※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
※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
※ 단,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
<table>
<tr><th colspan="2">30-100km</th><th colspan="2">101-200km</th><th colspan="2">201-300km</th><th colspan="2">301-400km</th></tr>
<tr><th>왕복 거리</th><th>금액</th><th>왕복거리</th><th>금액</th><th>왕복거리</th><th>금액</th><th>왕복거리</th><th>금액</th></tr>
<tr><td>30-40</td><td>8,000</td><td>101-120</td><td>13,000</td><td>201-220</td><td>25,000</td><td>301-320</td><td>45,000</td></tr>
<tr><td>41-60</td><td>9,000</td><td>121-140</td><td>15,000</td><td>221-240</td><td>29,000</td><td>321-340</td><td>49,000</td></tr>
<tr><td>61-80</td><td>10,000</td><td>141-160</td><td>17,000</td><td>241-260</td><td>33,000</td><td>341-360</td><td>53,000</td></tr>
<tr><td>81-100</td><td>11,000</td><td>161-180</td><td>19,000</td><td>261-280</td><td>37,000</td><td>361-380</td><td>57,000</td></tr>
<tr><td>-</td><td>-</td><td>181-200</td><td>21,000</td><td>281-300</td><td>41,000</td><td>381-400</td><td>61,000</td></tr>
<tr><th colspan="2">401-500km</th><th colspan="2">501-600km</th><th colspan="2">601-700km</th><th colspan="2">701km 이상</th></tr>
<tr><th>왕복거리</th><th>금액</th><th>왕복거리</th><th>금액</th><th>왕복거리</th><th>금액</th><th>왕복거리</th><th>금액</th></tr>
<tr><td>401-420</td><td>65,000</td><td>501-520</td><td>85,000</td><td>601-620</td><td>105,000</td><td>701-</td><td>125,000</td></tr>
<tr><td>421-440</td><td>69,000</td><td>521-540</td><td>89,000</td><td>621-640</td><td>109,000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4"></td></tr>
<tr><td>441-460</td><td>73,000</td><td>541-560</td><td>93,000</td><td>641-660</td><td>113,000</td></tr>
<tr><td>461-480</td><td>77,000</td><td>561-580</td><td>97,000</td><td>661-680</td><td>117,000</td></tr>
<tr><td>481-500</td><td>81,000</td><td>581-600</td><td>101,000</td><td>681-700</td><td>121,000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행사
진행자</td><td>※ 1~3등급은 특강 강사수당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등급</th><th>지급금액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행사료</td><td>1등급※</td><td>200,000/시간</td></tr>
<tr><td>2등급※</td><td>150,000/시간</td></tr>
<tr><td>3등급※</td><td>100,000/시간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기타
진행비</td><td>▪ 프로그램 진행 시,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교육재료비, 현수막, 배너, 홍보물 등 (사무용품, 소모품 구입)
※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(240-01)로 책정・활용
※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비교견적 시행</td></tr>
<tr><td>회계
검사
수수료
/필수</td><td>**▪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예상 기준액(부가세 포함)**
-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 : 440,000원 내외
- 3천만원 이상 ~ 4천만원 미만 : 550,000원 내외
※ 세무법인은 회계검사 불가하며 자체적으로 회계법인 지정 가능</td></tr>
</table>

목	세	구분	산출기준
운영비 (210)	공공요금 및 제세 (02)	공공요금	▪ **행사 진행 시 발생되는 우편료, 보험료 등**
	임차료 (07)	차량/장소/기자재	▪ **차량 임차 : 실비적용** -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,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▪ **장소 대관 :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** ※ 문화기반시설에 한하여 대관료를 인정. 1회(3시간 기준)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 (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, 단체 보유 시설 및 운영인력 관련 장소 집행 불가) ▪ **장비, 소품 등 기자재 대여**
	일반용역비 (14)	일반용역비	▪ **행사 대행업체 용역, 영상물 제작 용역(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 작업 제외)** **※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비교견적 시행**
여비 (220)	국내여비 (01)	여비기준	▪ **교통비 : 실비정액 기준(대중교통비 지급)** - 부득이하게 개인차량 이용 시 **차량유류비 지원 기준**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※ 사용자에게 교통비 지급 시 유류비, 통행료 등 카드 결제는 불가**(계좌이체 원칙)** - 출장결과 보고 등 영수증 증빙 필수 **[유류비 산출기준] 여행거리(km) × 유가 ÷ 연비** **o 여행거리(km)** -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,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※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(www.roadplus.com)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**o 유가** -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※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(www.opinet.co.kr)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(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,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, LPG 차량은 자동차 부탄)를 적용 **o 연비(km/ℓ) * 원 단위 절사** - 휘발유 차량 : 11.97(km/ℓ) / 경유 차량 : 12.52(km/ℓ) / LPG 차량 : 8.83(km/ℓ) - 하이브리드 차량 : 15.37(km/ℓ) / 전기차량 : 5.22(km/kwh) * 2023 인사혁신처 예규 제 132호에 따름
업무활동비 (240)	사업추진비 (01)	회의식비	▪ **다과비 기준단가 : 5,000원 이내 / 1인 1회 기준** - 참여자 대상 다과비 집행 시 : 매회 집행 불가, 기획 프로그램 운영 시 운영 권장 ▪ **회의식비 기준단가 : 9,000원 이내/ 1인 1식 기준** - 점심시간(12:00) 및 저녁시간(18:00)에 인접하여 일정이 끝나거나 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**※ 사업추진비는 전체 예산 중 10% 이내 편성** ※ 회의식비 지출 시 정확한 참여인원이 기재된 회의록과 사진 제출 필수 ※ 내부 관계자(행정인력, 주·보조강사)로 구성된 회의식비는 불인정이며, 반드시 외부 관계자(컨설팅 위원, 전문강사 등)와 함께 진행(회의록 내 명단 작성 필수)

목	세	구분	산출기준
인건비 (110)	기타직 보수	문화 예술 교육사	▪ **기관 근무형(공개채용원칙): 기본급은 2025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으로 책정(운영기간 8~10개월)** - 주40시간 근로 기준, 4대 보험금 중 개인부담금 기본급에 포함, 기관부담금은 별도 책정 -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연장·야간·휴일수당·출장비 책정 - 강사비와 중복지급 불가 ※ 공개채용원칙, 교육프로그램 기획·개발에서 운영 전반에 선발된 문화예술교육사 인력이 근무함 ※ 해당 기간 동안 시설 별 근로계약기준 준수하여 인건비, 직원복지 등 제공 ▪ **프리랜서형(공개채용원칙): 2025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으로 책정** - 기관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하되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연장·야간수당·출장비 책정
	일용 임금 (04)	보조 인력	▪ **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: 1일(8시간) 81,000원 / 1인** * 2024년 대비 1.7% 인상 - 2025년 최저임금 1시간 당 10,030원 X 8시간 = 80,240원 -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인건비의 150%를 지급 : 8시간 기준 121,500원 / 1인 - 예산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(초과근로 발생 시 재단과 사전 협의 필수) - 주휴일 지급 기준: 일하기로 정한 시간(소정근로시간)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(주휴를 포함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확보 필요) -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한 주로 봄 - 주휴수당 계산 방법: 81,000원 x 1주 소정근로시간 / 40

[참조] <u>보조금 집행 불가 사항</u>

- ㅇ 구입 : 자산성, 시혜성 물품(사례성 선물용품, 문화상품권 등)
- ㅇ 집행 : 사행성 경비, 주류 및 유흥성, 단체 운영을 위한 경상비(전기세, 전화요금 등), 지원금 집행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적립, 운영인력 내부 및 친·인척 거래처
- ㅇ 보조금의 경우 사업 통장과 연결된 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를 진행해야 할 경우 세금계산서 집행(강사비, 전문가 활용비, 보조인력비 예외)
- ㅇ 단체 및 개인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, 교육비